

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원장의 임명 등) ① 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제2항에 따라 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(이하 “원자력안전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(이하 “안전기술원”이라 한다)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 후보자를 제청하여야 한다.

② 원장 후보자의 추천절차, 임원추천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(이하 “안전기술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안전기술원”으로, “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(이하 “원자력안전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원자력안전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”를 “법 제14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제1조의2(원장의 임명 등) ① 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제2항에 따라 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(이하 “원자력안전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(이하 “안전기술원”이라 한다)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 후보자를 제청하여야 한다. ② 원장 후보자의 추천절차, 임원추천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제2조(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)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(이하 “안전기술원”이라 한다)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	제2조(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) 안전기술원----- ----- ----- ----- 원자력안전위 원회----- -----

<u>위원회(이하 “원자력안전위원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	----- ----- 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출연금 예산 결정 통보) 원 자력안전위원회는 「<u>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법</u>」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<u>한다</u>) 제14조에 따라 안전기술 원에 지급할 출연금 예산이 결정 되면 이를 안전기술원에 통보 하여야 한다.	제3조(출연금 예산 결정 통보) -- ----- <u>법 제14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